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540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운 분야 추가	2
2.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윤한홍의원안, 구자근의원안, 신영대의원안)	15

I. 개요

1.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54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구자근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2. 27.
- (3) 회 부 일 : 2025. 2.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2027년 말까지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신성장·원천기술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로봇은 시행령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으나 국가전략기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로봇의 활용 확대 및 관련 산업의 성장 등을 고려할 때 로봇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로봇을 법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는 한편, 각 기술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로봇 기술의 육성 및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운 분야 추가

현 행	개정안
○ 기업의 R&D 및 통합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 및 제24조) ○ 국가전략기술 범위(제10조)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 및 운송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	○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 국가전략기술 범위(제10조) - 방위산업 추가(윤한홍의원안, 허성무의원안) - 양자컴퓨터 추가(정일영의원안, 안철수의원안, 김상훈의원안) - 로봇 추가(구자근의원안) - 원자력 추가(허성무의원안) - 소형모듈원자로(SMR) 추가(이언주의원안, 안철수의원안, 김상훈의원안) - 우주항공 추가(허성무의원안, 박대출의원안) - 해상풍력 추가(이언주의원안) - 철강 추가(강승규의원안) - 인공지능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포함 명확화(황정아의원안) - 클라우드컴퓨팅 추가(김상훈의원안) - 재생에너지 추가(박지혜의원안) - 지속가능항공유 추가(문진석의원안) - 조세특례 대상 국가전략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로 규정(서범수의원안)

* 윤한홍의원안 2024. 11. 29. 발의(의안번호 6053), 정일영의원안 2025. 2. 6. 발의(의안번호 7924), 구자근의원안 2025. 2. 27. 발의(의안번호 8540), 허성무의원안 2025. 2. 28. 발의(의안번호 8567), 이언주의원안 2025. 5. 9. 발의(의안번호 10433), 강승규의원안 2025. 7. 4. 발의(의안번호 11290), 안철수의원안 2025. 7. 28. 발의(의안번호 11781), 황정아의원안 2025. 8. 8. 발의(의안번호 12059), 김상훈의원안 2025. 8. 18. 발의(의안번호 12218) 박지혜의원안 2025. 9. 5. 발의(의안번호 12733), 박대출의원안 2025. 9. 5. 발의(의안번호 12729), 문진석의원안 2025. 9. 18. 발의(의안번호 13087), 서범수의원안 2025. 9. 23. 발의(의안번호 13172)

1)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윤한홍의원안, 허성무의원안)

□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방위산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위산업은 방위산업물자, 무기체계 등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 포함)과 관련된 산업을 의미함.¹⁾

방위산업은 우리나라의 안보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요 수출 산업으로서 의의가 있음.

글로벌 방산 시장은 각국의 국방비 지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2022년 글로벌 국방비는 약 2.24조 달러로 2021년 글로벌 국방비 2.18조 달러 대비 3.7% 증가하였음.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동유럽의 2022년 국방비가 2021년 대비 58% 상승하였으며, 추후 국방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물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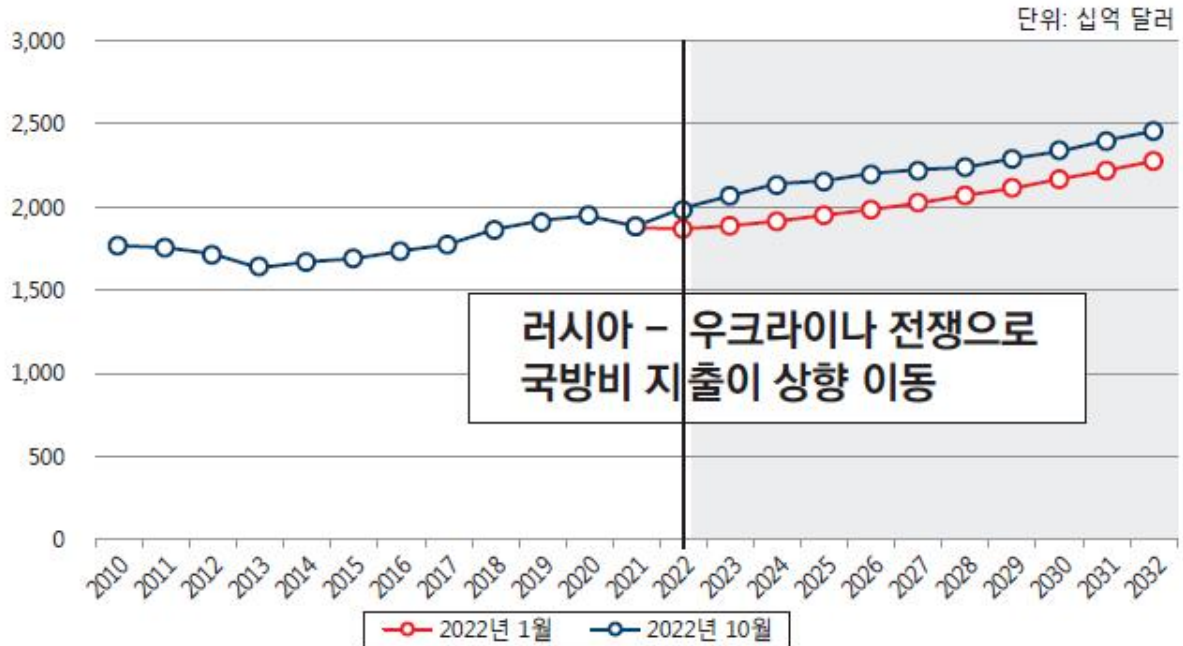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다.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략물자 중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자

라.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지정·고시한 물자

2.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글로벌 국방예산 전망(2010년~2032년)]



자료: 산업연구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방산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2023. 3.)

2018~2022년 글로벌 무기수출 시장 점유율은 미국이 약 40%(1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4%(9위)임.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2019년까지 수출액이 30억 달러 미만이었으나,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3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또한, 2023년 수출대상국은 12개국으로 2022년 4개국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고, 수출 무기체계 종류도 2배로 늘었음.²⁾

[최근 5년 방산 수출실적]

(단위: 억 달러)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액	25	30	73	173	135

자료: 방위사업청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한국무역보험공사, 「방위산업 현황과 전망」, 2024. 2.

□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신성장·원천기술의 분야로 지정되어 있는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추가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첫째, 방위산업에 대한 R&D와 설비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방산 수출 제고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방위산업은 무기 자체를 수출한 후에도 무기 운용 프로그램 개선, 부품 교체 및 정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무기 수출이 추가적인 수출로 연계되는 특징이 있음. 특히,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무력충돌 등 국제분쟁 격화로 긴장감이 고조됨에 향후 방산시장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참고로, 2022년에는 방위산업에서 13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46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³⁾

둘째,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 전력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늘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확보할 필요성이 크므로 방산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방위산업을 강화하여 수출을 늘리면 방산수출을 통한 잠금효과⁴⁾를 통해 국가간 안보협력을 공고히 하여 우리나라의 국방력 강

3) 국회예산정책처, 「나보 포커스: 방위산업 수출 현황 및 향후 과제」, 2024.7 .

화를 도모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방위산업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2024년 2월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추가되어 이전보다 R&D와 투자에 대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비교적 최근에 세제지원이 강화되었으므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 강화된 세제지원이 R&D 및 설비투자 촉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함.

둘째, 개정안과 같이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은 제한된 재정자원 하에서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우선적 투자대상을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해당 기술의 전략적 가치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문 의 처
02)6788-5154

4) 잠금효과(lock-in effect)는 A국이 B국의 무기체계 도입 후에는 A·B 간 안보 협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후 무기체계의 호환성 및 군사협력 강화로 발전되는 현상임.

2) 국가전략기술에 양자컴퓨터 추가(정일영의원안, 안철수의원안, 김상훈의원안)

-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양자컴퓨터를 추가하려는 것임.
- 양자소재란 열적 요동이 최소화되어 물질 고유의 미시세계를 기술하는 슈뢰딩거 방정식의 법칙을 잘 따르며 물질 파동 함수로 잘 기술되는 신소재를 말하고, 양자컴퓨터는 이론상 기존 실리콘 반도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고속 연산 및 기존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난제 해결형 알고리즘을 제공한다.

양자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 의료, 국방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됨.

[주요 산업별 양자컴퓨터 활용분야]

구 분	단 기	중장기
금융	- 위험 분석 및 관리	- 포트폴리오 최적화 - 고객 타겟팅 및 예측
의료·제약	- 신약 설계 - 단백질 구조 분석 - 암 진단 및 치료	- 맞춤 의료 서비스 - 방사선 치료 - 보험료 산정 및 위험 분석
소재	- 신소재 개발 - 자동차 배터리 및 운송수단 용 연료 소재 개발	- 양자 엔진
국방·안보·우주	- 암호체계 개발	- 방어 시나리오 생성
교통·물류·항공	- 교통 관리 - 비행 게이트 할당 - 물류자원 최적화	- 항공 운항 시스템 최적화 - 항공 화물 적재 최적화
제조·반도체	- 배터리 소재 최적화	- 제조 공정 최적화
사이버보안	- 암호기술 개발	- 차세대 암호체계 개발
기타	- 기상예측	- 지하자원 탐색 - 양자로봇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 글로벌 양자컴퓨터 시장은 2024년 8조 9,155억원에서 연평균 20.1%씩 확대되어 2031년 23조 1,202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2024년 789억원이었던 우리나라 양자컴퓨터 시장규모는 2031년 약 3,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⁵⁾.

양자기술이 미래 산업의 판도를 결정할 중추적인 기술로 부상하면서 주요국은 앞다투어 기술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투자를 늘리고 있음.

미국은 2018년 양자법(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을 제정하여 관계부처를 포괄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하였으며, 2021년에는 양자컴퓨터를 10대 첨단기술에 추가하고 2022년에는 백악관 산하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위원회를 설치하였음.

중국 역시 양자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하였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양자기술 분야에 약 19조원을 투자하였으며, 2035년까지 매년 양자기술 관련 연구개발비를 7% 이상 증액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미국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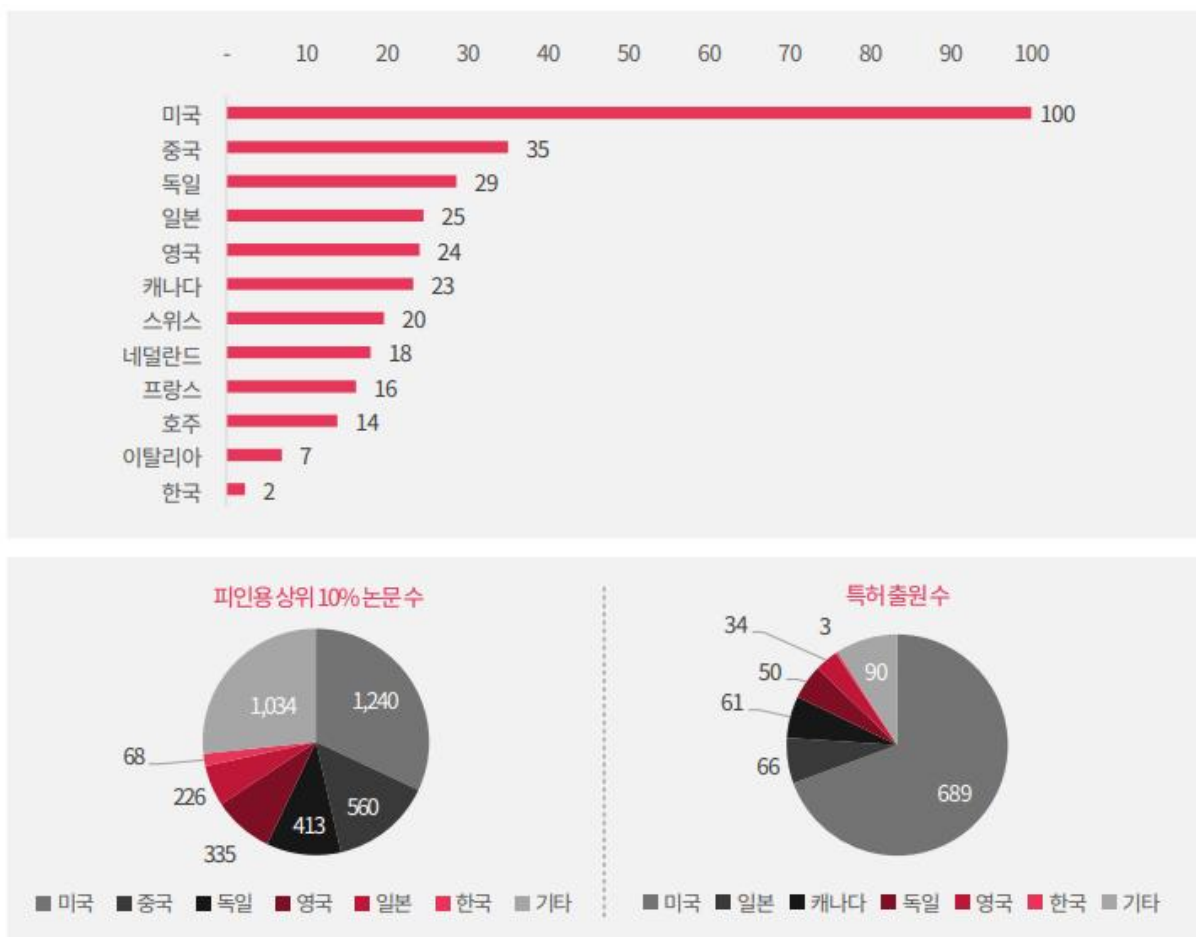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2021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양자기술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2022년 양자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였음. 2025년에는 전년 대비 54% 증액된 1,980억원의 양자과학기술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고, 양자기술 주도권 확보에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

5) 삼일PwC경영연구원, “큐비트의 마법, 상상을 계산하는 양자컴퓨터 혁명”, 2025. 3.

고자 민-관 합동 국가 양자과학기술 최상위 컨트롤타워인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양자 추진전략(퀀텀 이니셔티브)」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전략을 심의·의결하였음.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양자컴퓨터 기술 수준을 100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2위인 중국은 35점, 3위인 독일은 29점인 반면 우리나라는 2점으로 조사대상 국가 12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국 양자컴퓨터 기술 수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삼일PwC경영연구원

□ 이에 개정안은 양자컴퓨터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가전략 기술에 포함하여 양자컴퓨터 기술 관련 연구·인력개발비 및 사업화 시설·연구개발시설 투자비용에 대하여 현행대비 10%p 이상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첫째, 양자컴퓨터 분야에 대한 민간 분야의 투자 확대를 도모하는 효과가 기대됨.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양자기술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투자를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⁶⁾.

양자기술은 개발을 선도하는 국가에 그 기술이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기술 개발 및 특허 선점이 중요한데, 현재 양자컴퓨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IBM과 Google 대비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는 저조한 수준임.

또한, 양자컴퓨팅 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등 다른 분야에 파급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⁷⁾.

둘째, 양자컴퓨터를 비롯한 양자기술은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⁸⁾에 포함되어 있어 이미 국가적 관점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미래양자융합포럼, ‘2024 양자정보기술백서’, 2024. 12.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재료연구원,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국가주도 미래소재 기술 로드맵: 양자, 2023. 5.

에서 기술주권 확보가 필요한 분야로 인정된 분야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양자컴퓨터는 12대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양자컴퓨터 등 양자기술을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신성장·원천기술로 규정하고 있어 이차전지, 백신 등 다른 국가전략기술 대비 10%p 이상 낮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음.

또한, 국가전략기술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산업 현장의 혼란 및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양자컴퓨터는 이미 현행법령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분야 대비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음.

둘째, 개정안과 같이 양자컴퓨터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은 제한된 재정자원 하에서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우선적 투자대상을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해당 기술의 전략적 가치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문 의 처
02)6788-5154

8)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3) 국가전략기술에 로봇 추가(구자근의원안)

-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로봇을 추가하려는 것임.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되어 있는 로봇 분야를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분야로서 국가전략기술로 재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로봇을 국가전략기술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로봇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국내 로봇 산업의 투자 및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의 진흥과 고용 창출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신성장·원천기술의 분야로 지정되어 있는 로봇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추가하여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로봇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인공지능, 로봇공학, 자율주행 및 Io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로봇기술은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 로봇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2019년 5조 3,350억원에서 2023년 5조 9,805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로봇 관련 기업 수는 2019년 2,235개에서 2023년 2,524개로 늘어났으나, 전체 기업의 64%가 연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이고, 글로벌 로봇산

업이 서비스용 로봇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⁹⁾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조업용 로봇 매출액이 전체 매출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로봇을 국가전략기술에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서비스용 로봇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3년도 로봇산업 실태조사 결과]

(단위 : 억 원, %)

구 분	매 출				생 산			
	2021년	2022년	2023년	'22년 대비 증감	2021년	2022년	2023년	'22년 대비 증감
제조업용 로봇	28,740	29,747	29,903	0.5	26,514	27,319	27,902	2.1
전문서비스용 로봇	5,091	5,417	6,143	13.4	4,478	5,081	5,655	11.3
개인서비스용 로봇	3,985	4,406	4,313	△2.1	3,679	4,144	4,090	△1.3
로봇부품 및 소프트웨어	18,266	19,363	19,446	0.4	16,938	18,721	19,264	2.9
총 계	56,083	58,933	59,805	1.5	51,609	55,265	56,912	3.0

구 분	수 출				수 입			
	2021년	2022년	2023년	'22년 대비 증감	2021년	2022년	2023년	'22년 대비 증감
제조업용 로봇	8,981	9,327	9,248	△0.9	4,223	4,582	4,668	1.9
전문서비스용 로봇	353	435	713	63.9	243	270	349	29.3
개인서비스용 로봇	643	688	643	△6.4	217	236	189	△20.1
로봇부품 및 소프트웨어	1,568	1,798	1,880	4.5	1,150	1,291	1,356	5.0
총 계	11,546	12,248	12,484	1.9	5,833	6,380	6,562	2.9

(단위 : 개사, 백만 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체 수	로봇 매출	사업체 수	로봇 매출	사업체 수	로봇 매출
1억 원 미만	435	20,581	471	20,687	503	23,168
1억 원~10억 원 미만	1,291	498,972	1,213	467,086	1,106	484,349
10억 원~50억 원 미만	626	1,299,006	641	1,373,352	725	1,654,875
50억 원~100억 원 미만	71	485,899	109	697,138	112	705,074
100억 원 이상	78	3,303,826	75	3,335,050	79	3,113,045
총 계	2,500	5,608,284	2,509	5,893,314	2,524	5,980,512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한국로봇산업진흥원·한국로봇산업협회, 2023년 기준 로봇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24. 12.

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가 로봇 산업현황 및 지향점'. 2023. 5.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로봇은 이미 현행법령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일반적인 분야 대비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음.

둘째, 우리나라의 로봇산업은 판매시장 기준 세계 4위, 로봇밀도¹⁰⁾ 1위라는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국제로봇연맹(IFR)의 ‘2024 세계 로봇공학 보고서(2024 World Robotics Report)’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로봇밀도는 2018년 이후 매년 평균 5%씩 증가하여 전세계 모든 국가 중 유일하게 네 자리 수의 로봇밀도를 기록하였고, 연간 로봇 설치 대수 기준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로봇시장에 해당함.

셋째, 개정안과 같이 로봇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은 제한된 재정자원 하에서 전략적인 선택과 집종의 원리에 따라 우선적 투자대상을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해당 기술의 전략적 가치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문 의 처
02)6788-5154

10) 로봇 밀도는 직원 수 대비 가용 산업용 로봇 수를 의미함.

2.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윤한홍의원안, 구자근의원안, 신영대의원안)

현행					개정안
○ R&D 세액공제(제10조)					○ R&D 세액공제(제10조)
○ 유형별 공제율					○ 유형별 공제율
					- (현행과 같음)
구분(%)	기본			추가 ¹⁾	
	대	중견	중소		
일반(당기분 방식)	최대 28	20 ¹⁾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 25 ²⁾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30, 35 ³⁾	40	최대 10	
1)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1) (~3년)20%, (4~5년)15%, (6년~)8%					
2) (~3년)25%, (4년~)20%					
3) (~3년)35%, (4년~)30%					
○ 적용기한					○ 적용기한 연장
- 신성장·원천기술:					- 신성장·원천기술:
2029. 12. 31.					2027. 12. 31. (윤한홍의원안)
					2029. 12. 31. (구자근의원안)
-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분야 기술 제외):					- 국가전략기술:
2029. 12. 31.					2027. 12. 31. (윤한홍의원안)
					2029. 12. 31. (구자근의원안)
					2035. 12. 31. (신영대의원안)
- 반도체 분야 기술:					- 반도체 분야 기술:
2031. 12. 31.					2035. 12. 31. (신영대의원안)

* 윤한홍의원안 2024. 11. 29. 발의(의안번호 6053), 구자근의원안 2025. 2. 27. 발의(의안번호 8540), 신영대의원안 2025. 4. 17. 발의(의안번호 9937)

☐ 개정안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주요 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2025년 2월 세법개정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및 반도체 분야 기술

을 제외한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2029년 말까지,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말까지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윤한홍의원안과 구자근의원안의 경우 입법취지가 이미 달성되었음.

- 한편, 신영대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35년 말까지 추가적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다만, 반도체 분야 기술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의 중요성에 따라 2025년 2월 세법개정을 통해 적용기한을 연장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례 적용기한을 당장 연장하기 보다는 추후 조세특례의 성과, 지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154
